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변경(안 제6조제2항)
 -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관련 조항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7조제2항)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기간: 2026. 5. 29(금) ~ 2026. 6. 18(목) [20일 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7.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우선구매 촉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매목표비율”을 “구매목표 비율”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우선구매촉진”을 각각 “우선구매 촉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구매촉진”을 각각 “구매 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우선구매 촉진계획”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법 제7조제3항제2호를 따른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우선구매 촉진계획”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노인장애인과 ☎ 940-8420
입 안 자	노인장애인과장	우 은 정
	장애인시설팀장	정 향 숙
	담 당 자	전 혜 립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시 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 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 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이하 “<u>우선구매촉진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 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총구매 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u>구매목표비율</u> 2. 중증장애인생산품 <u>우선구매</u> <u>촉진</u>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 진방향 3. 중증장애인생산품 <u>우선구매</u> <u>촉진</u>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4. (생 략) 5. 중증장애인생산품 <u>구매촉진</u> 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중증장애인생산품 <u>구매촉진</u> 을 위한 담당부서에 관한 사 	<p>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 ----- ----- ----- ----- --- “<u>우선구매 촉진계획</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u>구매목표 비율</u> 2. ----- <u>우선구매</u> <u>촉진</u>----- ----- 3. ----- <u>우선구매</u> <u>촉진</u>----- ----- 4. (현행과 같음) 5. ----- <u>구매 촉진</u>- ----- -- 6. ----- <u>구매 촉진</u>- -----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애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

----- 우선구매 촉진계획 -----

-----.

□ 관계법령 발췌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중간생략)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
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
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
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
리 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
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⑦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
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관계법령 발췌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제3항제2호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구매목표 비율,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및 재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100분의 1.1로 한다

(이하 생략)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과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과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과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과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과주시의회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4.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협조 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사

업 등

제10조(평가 및 표창)

- 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3. 4. 10.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노인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경기파주023)

1. 노인장애인과-28474(2026.05.14)호와 관련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여성가족관장 직

여성정책전문위원	권문영	여성정책팀장	이영심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2026. 5. 15.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10030	(2026. 5. 15.)	접수	노인장애인과-28659	(2026. 5. 15.)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복지동 1층 여성가족과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4	팩스번호	031-940-4419	/ myjihee@korea.kr	/ 비공개(5)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노인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노인장애인과-28307(2026. 5. 13.)호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주관부서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2026-23	노인장애인과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원안동의

- 붙임 1. 결과통보서 1부.
2.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윤수진 감사2팀장 이선 감사관 전결 2026. 5. 14. 유대승
협조자
시행 감사관-5995 (2026. 5. 14.) 접수 노인장애인과-28551 (2026. 5. 14.)
우 10930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감사관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5840 팩스번호 031-940-4089 / yoon55@korea.kr / 비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6-23		
자치법규명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8급 윤수진
주 관 부 서	노인장애인과	주 관 부 서 담 당 직 급 및 성 명	복지7급 전해림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6. 5. 14.		
통 보 내 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노인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회신[「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일부개정안)

1. 노인장애인과-28255(2026. 5. 13.)호와 관련합니다.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심사의견
노인장애인과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규제 해당사항 없음

붙임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서 1부. 끝.

예산법무과장권

주무관 권성원 규제개혁통계팀장 김선정 의회법무팀장 노영진 대결 2026. 5. 13.

협조자

시행 예산법무과-8428 (2026. 5. 13.) 접수 노인장애인과-28346 (2026. 5. 13.)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59 / ksw8732@korea.kr / 비공개(5)

